## 평택 화양 | 동문 디 이스트 | 특별공급 안내



## ■ 청약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05.07.(화)	24.05.08.(수)	24.05.09.(목)	24.05.16.(목)	24.05.18.(토)~ 24.05.22.(수)	24.05.27.(월)~ 24.05.29.(수)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PC·모바일) 청약홈(09:00~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주소:경기 평택시 학현리 산 75-24)	

## ■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구분(약식표기)			84A	84B	107	합계
	국가유공자		11	3	-	14
	장기복무 제대군인		11	3	-	1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1	3	-	14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중소기업 근로자		11	3	-	14
	장애인	경기	6	2	-	8
		서울	5	1	-	6
		인천	4	1	-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50%)		27	7	4	38
디지터기구 흑글등급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50%)		26	7	4	37
신혼부부 특별공급			108	28	-	13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6	4	4	24
생애최초 특별공급			54	14	-	68
합 계			290	76	12	378

## ■ 트벽고급 유형벽 시청자견

구분	신청자격					
기관추천 특별공급	■ 대상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자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거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2.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함) ■ 청약 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자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 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2.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3.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 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대상자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2.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청약 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 대상자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청약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1.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라, 단독 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라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